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 외 농 업 · 산 립 자 원 개 발 협 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반입명령의 요건 및 절차(안 제27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국내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반입가격, 반입시기 및 반

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27조의2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및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2)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28.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비상 시 농업·산림자원의 확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

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반입명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 반입시기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임업진흥원”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보조 및 해외협

력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용자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경제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u>

<신 설>

제27조(반입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과 반입시기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제27조(반입명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

농업·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 반입시기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

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신 설>

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

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 (생략)

<신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

	<u>에 관한 사무</u> 8. <u>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u> <u>· 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u> <u>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9. <u>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u> <u>· 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u> <u>및 관리에 관한 사무</u> 10. <u>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u> <u>· 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u> <u>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2040